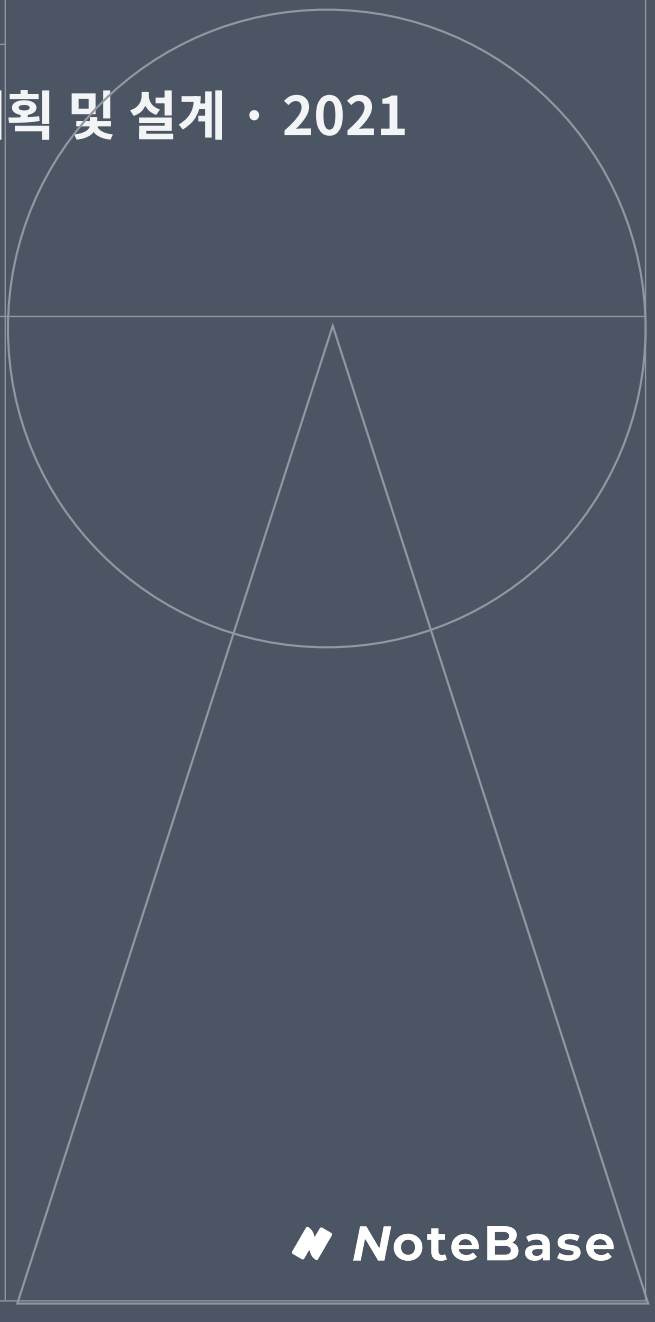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9급 · 조경계획 및 설계 · 2021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9급 · 조경계획 및 설계 · 2021

공무원/국가직/9급 · 조경계획 및 설계 · 2021

문 1. 린치(K. Lynch)가 제시한 도시의 이미지 형성에 기여하는 물리적 요소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지역 (districts)
ㄴ. 통로 (paths)
ㄷ. 상징 (symbols)
ㄹ. 결절점 (nodes)
ㅁ. 장소 (place)

① ㄱ, ㄴ, ㄹ
② ㄱ, ㄷ, ㄹ
③ ㄴ, ㄷ, ㅁ
④ ㄴ, ㄹ, ㅁ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린치가 말한 시각적 기준점은 **랜드마크(landmarks)**이다. '상징(symbols)'이나 '장소(place)'는 도시와 관련된 말이지만, 그가 구분한 다섯 물리적 요소의 독립된 명칭은 아니다.

NoteBase

보기별 해설

린치는 도시 이미지의 물리적 요소를 통로(paths), 경계(edges), 지역(districts), 결절점(nodes), 랜드마크(landmarks)의 다섯 가지로 구분하였다. 여기서 경계는 해안선이나 벽처럼 영역을 나누거나 이어 주는 선형 요소이다.

ㄱ. O: 지역(districts)은 **공통된 성격으로 식별되는 도시의 영역**이다. 관찰자가 그 안에 들어와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 면적을 지니며, 도시의 부분들을 구별하게 한다.

ㄴ. O: 통로(paths)는 도로·보행로처럼 **관찰자가 이동하는 경로**이다. 사람은 통로를 따라 움직이며 주변 요소의 위치와 관계를 파악한다.

ㄷ. X: 상징(symbols)은 다섯 요소의 독립된 분류명이 아니다. 도시에서 눈에 띄어 위치나 방향을 파악하는 기준이 되는 물리적 대상은 **랜드마크(landmarks)**로 구분한다. 상징성을 지닌 건축물도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요소의 명칭을 '상징'으로 바꾸어 부를 수는 없다.

ㄹ. O: 결절점(nodes)은 교차로·환승 지점처럼 이동 경로가 만나거나, 광장처럼 활동이 집중되는 **도시의 중심 지점**이다. 통로가 이동 경로라면 결절점은 그 이동이 모이거나 전환되는 지점이다.

ㅁ. X: 장소(place)는 다섯 요소의 독립된 분류명이 아니다. 광장 같은 장소는 그 기능에 따라 **결절점**으로 파악할 수 있지만, '장소'라는 일반적인 말 자체가 린치의 요소명은 아니다.

따라서 보기에 제시된 요소 중 해당하는 것은 ㄱ·ㄴ·ㄹ이며, 이 조합은 ①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2. 「조경설계기준」 상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테니스장은 코트의 면을 평활하고 정확한 바운드를 만들 수 있도록 처리한다.

② 소음 등 주거지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곳에 배치한다.

③ 육상경기장은 태양광선에 의한 눈부심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축을 동서 방향으로 배치한다.

④ 축구장은 장축의 방향이 남북에 평행하도록 배치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육상경기장의 장축은 눈부심을 줄이도록 **남북 또는 북북서–남남동 방향**으로 배치한다. 동서 방향으로 길게 놓으면 아침이나 저녁의 낮은 햇빛을 진행 방향에서 마주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O: 테니스장 코트는 **표면을 평활하게 처리하여 공이 정확하게 튀도록** 해야 한다. 표면에 요철이 있으면 공의 반발 방향이나 높이가 불규칙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KDS 34 50 30의 4.3.1(5)는 코트 면의 평활성과 정확한 바운드를 요구한다.

② O: 운동공간은 **소음 등으로 인한 주거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곳에 배치한다. 경기나 이용 활동에서 생기는 소음이 인근 주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배치 단계에서 고려하는 기준이다. 이는 KDS 34 50 30의 2.2.1(1)⑦에 해당한다.

③ X: 육상경기장의 트랙과 필드 장축은 **남북 또는 북북서–남남동 방향**으로 배치한다. 동서 방향으로 배치하면 아침이나 저녁에 낮게 비치는 햇빛을 진행 방향에서 마주할 수 있어 눈부심을 줄이려는 목적에 맞지 않는다. 선지의 '동서 방향'을 '남북 또는 북북서–남남동 방향'으로 고쳐야 한다. 근거는 KDS 34 50 30의 4.1.1(1)이다.

④ O: 축구장은 **장축을 남북 방향에 평행하게** 배치한다. 장축은 경기장의 긴 변 방향을 뜻하며, 이러한 배치는 경기자가 동쪽이나 서쪽의 낮은 햇빛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영향을 줄이는 데 유리하다. KDS 34 50 30의 4.2.1(1)에서 정한 배치 방향이다.

NoteBase

문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 근린공원의 ㉠ 유치거리와 ㉡ 규모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단, 해당 법률의 예외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① 근린생활권 근린공원 ㉠ 500미터 이하 ㉡ 1만제곱미터 이상

② 도보권 근린공원 ㉠ 1천미터 이하 ㉡ 2만제곱미터 이상

③ 도시지역권 근린공원 ㉠ 2천미터 이하 ㉡ 5만제곱미터 이상

④ 광역권 근린공원 ㉠ 제한없음 ㉡ 10만제곱미터 이상

정답 1번

①

예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근린생활권 근린공원의 유치거리는 **500미터 이하**이고 규모는 **1만제곱미터 이상**이다.

https://d2u7om5rih5x7z.cloudfront.net/ox-images/drive-repair/1FssYGZkZUeaAfLWWGxqFC0BSum-UPuZw.webp

②

도보권 근린공원은 주로 도보권 안에 거주하는 사람의 이용을 위한 공원으로, 유치거리 **1천미터 이하**, 규모 **3만제곱미터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https://d2u7om5rih5x7z.cloudfront.net/ox-images/drive-repair/1rrMS9cjymraO0GONHUX8x6UGATMFC66d.webp

③

도시지역권 근린공원은 도시지역 전체 주민의 종합적인 이용을 위한 공원으로, **유치거리 제한이 없고** 규모는 **10만제곱미터 이상**이다.

https://d2u7om5rih5x7z.cloudfront.net/ox-images/drive-repair/1MLeAyZw_qn4wxe1JT9YI8fmW5Hcwgx2z.webp

④

예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광역권 근린공원의 유치거리는 **제한이 없고** 규모는 **100만제곱미터 이상**이다.

https://d2u7om5rih5x7z.cloudfront.net/ox-images/drive-repair/1f2QoaqBUvVWExdaMwjc5DevfNbBRGWT3.webp

NoteBase

문 4. 「조경설계기준」 상 '조경동선시설' 기준에서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보행로

② 자전거 도로

③ 유지 관리용 도로

④ 공원, 녹지 등의 차량용 도로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조경동선시설 기준은 도로를 공원·녹지 등의 차량용 도로, 자전거 도로, 보행로로 규정한다. **유지 관리용 도로는 별도 도로 종류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개념 구분

KDS 34 50 50 '조경동선시설'의 1.7.1 전제 조건 (1)은 도로의 범위를 공원·녹지 등의 차량용 도로, 자전거 도로, 보행로로 정한다. 따라서 이 기준의 도로에는 자동차가 다니는 길뿐 아니라 **자전거 도로와 보행로도 포함**된다. ①·②·④는 이 규정에 명시된 종류이다.

③의 유지 관리용 도로는 위 규정에서 **독립된 도로 종류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유지·관리 작업에 쓰이는 길을 떠올려 도로의 종류에 추가하지 않고, 해당 기준이 명시한 세 종류와 구분해야 한다.

NoteBase

문 5. 가을에 꽃이 피고 향기가 나는 수종은?

① Osmanthus fragrans

② Cornus officinalis

③ Cercis chinensis

④ Magnolia denudata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목서(Osmanthus fragrans)는 **가을에 향기로운 꽃**을 피우는 수종이다. 꽃의 향기와 개화 시기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핵심 풀이

목서(Osmanthus fragrans)는 상록활엽수로, 가을에 잎겨드랑이에 작은 꽃이 모여 피며 강한 향기를 낸다.
따라서 발문의 **가을 개화와 꽃의 향기**라는 두 조건에 부합한다.

산수유(Cornus officinalis), 박태기나무(Cercis chinensis), 백목련(Magnolia denudata)은 주로 봄에 꽃이 핀다. 특히 백목련도 향기로운 꽃을 피우지만, **개화 시기가 봄**이므로 가을에 꽃이 피는 목서와 구별된다.

NoteBase

문 6.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방법에 관한 지침」상 비오톱 관련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비오톱”이라 함은 인간의 토지이용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아 특징지어진 지표면의 공간적 경계로서 생물군집이 서식하고 있거나 서식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공간단위를 말한다.

② “비오톱 유형”이라 함은 기본 주제도를 통해 분석된 비오톱 공간의 구조적·생태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분류한 것을 말하며 이를 지도화 한 것을 “비오톱유형도”라 한다.

③ “비오톱 평가”라 함은 비오톱 유형화를 통해 구분된 개별공간을 다양한 평가항목을 적용하여 그 가치를 등급화하는 과정을 말하며 등급을 지도화 한 것을 “비오톱평가도”라 한다.

④ “대표비오톱”이란 도시생태현황지도 평가를 통해 우수 등급으로 평가된 유형 중에서 희소성, 생물다양성 등 생태적 가치가 특히 우수한 비오톱을 말한다.

정답 4번

①

비오톱은 인간의 토지이용 영향을 받아 특징지어진 지표면의 공간단위로, **생물군집이 현재 서식하는 곳뿐 아니라 서식할 잠재력이 있는 곳**도 포함한다.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방법에 관한 지침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오톱"이라 함은 인간의 토지이용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아 특징지어진 지표면의 공간적 경계로서 생물군집이 서식하고 있거나 서식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공간단위를 말한다.

②

기본 주제도에서 파악한 비오톱의 **구조적·생태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분류한 것이 비오톱 유형**이며, 그 분류 결과를 지도에 나타낸 것이 비오톱유형도이다.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방법에 관한 지침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비오톱 유형"이라 함은 기본 주제도를 통해 분석된 비오톱 공간의 구조적 · 생태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분류한 것을 말하며 이를 지도화 한 것을 "비오톱유형도"라 한다.

③

비오톱 평가는 유형화로 구분된 개별공간에 여러 평가항목을 적용하여 **가치를 등급으로 매기는 과정**이다. 그 등급을 지도로 표현한 것이 비오톱평가도이다.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방법에 관한 지침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비오톱 평가"라 함은 비오톱 유형화를 통해 구분된 개별공간을 다양한 평가항목을 적용하여 그 가치를 등급화하는 과정을 말하며 등급을 지도화 한 것을 "비오톱평가도"라 한다.

NoteBase

④

우수 등급으로 평가된 유형 중 희소성·생물다양성 등 생태적 가치가 특히 우수한 것은 **우수비오톱**이다.
대표비오톱은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과정에서 도출된 **도시 전체의 비오톱 유형별 대표성을 갖는 비오톱**이다.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방법에 관한 지침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대표비오톱"이란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과정에서 도출된 도시 전체의 비오톱 유형별 대표성을 갖는 비오톱을 말한다.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방법에 관한 지침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7. "우수비오톱"이란 도시생태현황지도 평가를 통해 우수 등급으로 평가된 유형 중에서 희소성, 생물다양성 등 생태적 가치가 특히 우수한 비오톱을 말한다.

NoteBase

문 7. ㄱ시에 소재한 400 m^2의 대지에 건폐율 60%, 용적률 400%로 최대범위까지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최소조경면적으로 옳은 것은?

ㄱ시 건축조례(대지안의 조경)
◯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① 60 m^2
② 40 m^2
③ 20 m^2
④ 10 m^2

정답 2번

공통 해설

연면적은 대지면적에 용적률을 곱하여 산정하므로 $400 \times 4 = 1{,}600m^2$이다. 지문에서 **연면적 1,000㎡ 이상 2,000㎡ 미만은 대지면적의 10% 이상을 조경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므로, 최소 조경면적은 $400 \times 0.1 = 40m^2$이다.

건축법 제56조(건축물의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용적률"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NoteBase

문 8.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매뉴얼」상 식생체류지의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유입부, 침강지, 저류 및 침투부 등으로 구성된다.

② 토양층, 모래층, 자갈층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식생은 초본 또는 관목으로 구성한다.

④ 수질정화 기능은 강우 후 최대 7일 이내로 처리되도록 구성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④의 '최대 7일 이내'는 **강우 후 최대 3일(72시간) 이내**로 고쳐야 한다. 식생체류지는 빗물을 일시적으로 모아 토양층을 통해 여과·침투시키는 시설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식생체류지는 **유입부, 침강지, 저류 및 침투부** 등으로 구성된다. 강우유출수를 받아들이고, 토사 등을 가라앉힌 뒤, 물을 일시적으로 저장하면서 땅속으로 스며들게 하는 기능을 갖춘다.

② O: 식생체류지는 **토양층, 모래층, 자갈층**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식물이 자라는 토양층과 그 아래의 층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강우유출수가 여과·침투되므로, 식생과 토양층을 함께 이용해 비점오염물질을 줄인다.

③ O: 식생은 **초본 또는 관목**으로 구성한다. 식물은 토양층에 뿌리를 내리고 오염물질의 흡수 등에 기여하므로, 식재부는 단순한 경관 요소가 아니라 수질정화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이다.

④ X: 매뉴얼의 식생체류지 설치기준에서는 강우 후 **최대 3일(72시간) 이내**에 처리되도록 구성한다. 따라서 '최대 7일 이내'라는 기간이 잘못되었다. 유입된 물을 장기간 담아 두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저류한 뒤 여과·침투 등을 통해 처리하도록 계획한다.

NoteBase

문 9.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은?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②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③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④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정답 1번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① 시 ·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植生)이 양호한 산지(山地)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③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을 규정하는 법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① 시 ·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植生)이 양호한 산지(山地)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NoteBase

문 10. 「조경설계기준」 상 '일반식재기반' 기준에서 심근성 교목의 생육토심에 관한 사항으로 ㉠ 토양등급 상급이상의 생육최소토심과 ㉡ 배수층 두께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① ㉠: 150 cm, ㉡: 30 cm

② ㉠: 100 cm, ㉡: 30 cm

③ ㉠: 80 cm, ㉡: 20 cm

④ ㉠: 60 cm, ㉡: 20 cm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심근성 교목의 생육최소토심은 **토양등급 상급 이상에서 100 cm**이고, 배수층 두께는 **30 cm**이다. 150 cm는 토양등급 중급 이상에 적용되는 생육최소토심이다.

대응 관계 해설

㉠ 생육최소토심: 100 cm이다. '일반식재기반'(KDS 34 30 10)의 1.6.3 '식물의 생육토심', 표 1.6-1에서 심근성 교목은 토양등급 중급 이상이면 150 cm, **상급 이상이면 100 cm**의 생육최소토심을 적용한다. 문제는 상급 이상의 조건을 제시했으므로 150 cm와 구분해야 한다.

㉡ 배수층 두께: 30 cm이다. 같은 표에서 심근성 교목의 배수층 두께는 **30 cm**로 제시된다. 배수층은 토양의 과잉 수분이 빠져나가도록 하는 층이며, 뿌리가 생육하는 토양층의 깊이인 생육최소토심과 별도로 구분한다.

㉠ 100 cm와 ㉡ 30 cm를 연결한 조합은 ②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11. 「자연공원법」상 용도지구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공원자연환경지구
ㄴ. 공원마을지구
ㄷ. 공원자연보호지구
ㄹ. 공원문화유산지구
ㅁ. 집단시설지구
ㅂ. 공원자연보존지구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ㄹ, ㅂ
③ ㄴ, ㄷ, ㄹ, ㅂ
④ ㄴ, ㄷ, ㅁ, ㅂ

정답 2번

ㄱ

공원자연환경지구는 **공원자연보존지구의 완충공간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정하는 용도지구이다.

자연공원법 제18조(용도지구)
①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을 효과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를 공원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4.5, 2016.5.29, 2019.11.26, 2023.8.8>
2.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자연보존지구의 완충공간(緩衝空間)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ㄴ

공원마을지구는 **마을이 형성된 지역으로서 주민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역**을 정하는 용도지구이다.

자연공원법 제18조(용도지구)
①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을 효과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를 공원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4.5, 2016.5.29, 2019.11.26, 2023.8.8>
3. 공원마을지구: 마을이 형성된 지역으로서 주민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지역

NoteBase

ㄷ

법정 용도지구의 명칭은 **공원자연보존지구**이며, 공원자연보호지구라는 용도지구는 없다.

자연공원법 제18조(용도지구)
①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을 효과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를 공원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4.5, 2016.5.29, 2019.11.26, 2023.8.8>
1. 공원자연보존지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
가.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한 곳
나. 자연생태계가 원시성을 지니고 있는 곳
다.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높은 야생 동식물이 살고 있는 곳
라. 경관이 특히 아름다운 곳
2.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자연보존지구의 완충공간(緩衝空間)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공원마을지구: 마을이 형성된 지역으로서 주민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지역
4. 삭제<2011.4.5>
5. 삭제<2011.4.5>
6. 공원문화유산지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을 보유한 사찰(寺刹)과 전통사찰보존지 중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전에 필요하거나 불사(佛事)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

ㄹ

공원문화유산지구는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등을 보유한 사찰과 전통사찰보존지 중 **문화유산·자연유산의 보전에 필요하거나 불사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지역**을 정하는 용도지구이다.

자연공원법 제18조(용도지구)
①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을 효과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를 공원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4.5, 2016.5.29, 2019.11.26, 2023.8.8>
6. 공원문화유산지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을 보유한 사찰(寺刹)과 전통사찰보존지 중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전에 필요하거나 불사(佛事)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

NoteBase

ㅁ

법정 용도지구는 **공원자연보존지구·공원자연환경지구·공원마을지구·공원문화유산지구**의 네 가지이며, 집단시설지구는 포함되지 않는다.

자연공원법 제18조(용도지구)
①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을 효과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를 공원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4.5, 2016.5.29, 2019.11.26, 2023.8.8>
1. 공원자연보존지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
가.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한 곳
나. 자연생태계가 원시성을 지니고 있는 곳
다.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높은 야생 동식물이 살고 있는 곳
라. 경관이 특히 아름다운 곳
2.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자연보존지구의 완충공간(緩衝空間)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공원마을지구: 마을이 형성된 지역으로서 주민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지역
4. 삭제<2011.4.5>
5. 삭제<2011.4.5>
6. 공원문화유산지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을 보유한 사찰(寺刹)과 전통사찰보존지 중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전에 필요하거나 불사(佛事)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

ㅂ

공원자연보존지구는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한 곳, 원시적 자연생태계가 있는 곳, 보호가치가 높은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 또는 경관이 특히 아름다운 곳 중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정하는 용도지구이다.

자연공원법 제18조(용도지구)
①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을 효과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를 공원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4.5, 2016.5.29, 2019.11.26, 2023.8.8>
1. 공원자연보존지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
가.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한 곳
나. 자연생태계가 원시성을 지니고 있는 곳
다.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높은 야생 동식물이 살고 있는 곳
라. 경관이 특히 아름다운 곳

NoteBase

문 12. 경복궁의 원유가 아닌 것은?

① 경회루 지원

② 교태전 후원의 아미산

③ 부용지

④ 향원지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부용지는 경복궁이 아니라 **창덕궁 후원**에 있는 연못이다. 경복궁의 향원지와 소속 궁궐을 구분해야 한다.

개념 구분

경복궁의 원유: 경회루 지원은 경회루 주변의 연못과 정원이며, 아미산은 교태전 뒤에 조성한 **계단식 화단**이다. 향원지는 향원정이 자리한 연못이다. 이 세 공간은 모두 경복궁에 속한다.

창덕궁의 원유: 부용지는 **창덕궁 후원**의 연못으로, 주변에 부용정과 주합루가 있다. 따라서 부용지를 경복궁의 원유에 포함하면 소속 궁궐을 잘못 연결한 것이다.

NoteBase

문 13. 「자연환경보전법」은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속가능한 보전·관리를 위하여 생태적 특성, 자연경관 및 지형여건 등을 고려하여 생태·경관보전지역을 구분하여 지정·관리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생태·경관핵심보전구역
② 생태·경관완충보전구역
③ 생태·경관전이보전구역
④ 생태·경관별도보전구역

정답 4번

③

생태·경관전이보전구역은 **핵심구역 또는 완충구역에 둘러싸인 취락지역으로서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생태 · 경관보전지역)
②환경부장관은 생태 · 경관보전지역의 지속가능한 보전 · 관리를 위하여 생태적 특성, 자연경관 및 지형여건 등을 고려하여 생태 · 경관보전지역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정 · 관리할 수 있다.
3. 생태 · 경관전이(轉移)보전구역(이하 "전이구역"이라 한다) : 핵심구역 또는 완충구역에 둘러싸인 취락지역으로서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④

생태·경관보전지역은 **핵심보전구역·완충보전구역·전이보전구역**으로 구분한다. 생태·경관별도보전구역은 법정 구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생태 · 경관보전지역)
②환경부장관은 생태 · 경관보전지역의 지속가능한 보전 · 관리를 위하여 생태적 특성, 자연경관 및 지형여건 등을 고려하여 생태 · 경관보전지역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정 · 관리할 수 있다.
1. 생태 · 경관핵심보전구역(이하 "핵심구역"이라 한다) :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의 훼손방지를 위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지역
2. 생태 · 경관완충보전구역(이하 "완충구역"이라 한다) : 핵심구역의 연접지역으로서 핵심구역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생태 · 경관전이(轉移)보전구역(이하 "전이구역"이라 한다) : 핵심구역 또는 완충구역에 둘러싸인 취락지역으로서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NoteBase

문 14. 페리(C. A. Perry)가 제시한 근린주구 조성을 위한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거단위는 하나의 초등학교를 유지할 수 있는 인구를 가져야 하고, 면적은 인구밀도에 따라 달라진다.

② 공공시설로서의 학교와 교회 등은 주구 중심부에 통합 배치한다.

③ 내부도로체계로 순환교통을 촉진하고 통과교통을 허용하도록 분산형 가로망으로 계획한다.

④ 오픈스페이스와 관련하여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계획된 소공원과 레크리에이션 체계를 갖춘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③의 '통과교통을 허용'한다는 설명이 잘못되었다. 페리의 근린주구는 내부 이동을 원활하게 하되 **통과교통은 억제**하고, 이를 주구 경계의 간선도로로 우회시켜 안전한 주거환경을 확보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근린주구의 인구 규모는 **초등학교 하나를 유지할 수 있는 인구**를 기준으로 정한다. 필요한 인구가 같아도 인구밀도가 높으면 주구 면적은 작아지고, 인구밀도가 낮으면 더 넓은 면적이 필요하다.

② O: 학교와 교회 등 주구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공동시설은 **주구 중심부에 모아 배치**한다.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시설을 중심에 두어 접근하기 쉽게 하고 공동생활의 중심을 형성한다.

③ X: 내부 이동을 원활하게 한다는 취지는 맞지만, **통과교통을 허용하도록 계획한다는 부분**이 잘못되었다. 내부도로는 예상 교통량에 맞게 계획하면서 외부 차량이 주거지를 지름길로 이용하는 통과교통을 억제해야 한다. 곡선형 도로와 막다른 도로 등을 활용하고, 통과교통은 주구 경계의 간선도로로 우회시켜 주거지의 안전과 정온성을 확보한다.

④ O: 오픈스페이스는 **주민의 수요에 맞춘 소공원과 레크리에이션 공간의 체계**로 계획한다. 일상적인 휴식·놀이·운동을 주구 안에서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공간을 마련하는 원칙이다.

NoteBase

문 15. 「조경설계기준」상 '수목식재' 기준에서의 토지이용 상충지역 완충녹지에 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완충녹지의 폭원은 최소 20m를 확보한다.

② 방풍녹지용 수목은 줄기와 가지가 건전하고 지엽이 치밀한 심근성 수종을 선정한다.

③ 요구되는 높이의 상록수가 없을 때는 성장이 빠른 낙엽수를 배식한다.

④ 차폐녹지는 상록수로서 지엽의 밀도가 낮은 것을 선택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차폐녹지는 가리고자 하는 대상이 잘 보이지 않도록 **지엽의 밀도가 높은 상록수**를 선택한다. 가지와 잎이 성기면 시선이 통과하기 쉬우므로, ④의 '밀도가 낮은'은 '밀도가 높은'으로 고쳐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조경설계기준」의 '수목식재'(KDS 34 40 10) 4.1.1(4)는 토지이용 상충지역 완충녹지의 폭원을 **최소 20 m**로 정한다. 폭원은 녹지대의 너비를 뜻하며, 서로 상충하는 토지이용 사이에 완충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이다.

② O: 같은 기준 4.1.1(11)에 따라 방풍녹지에는 줄기와 가지가 건전하고, 가지와 잎이 치밀하며, 뿌리가 깊게 뻗는 **심근성 수종**을 선정한다. 치밀한 지엽은 바람을 약화시키고 깊은 뿌리는 수목이 바람에 견디는 데 도움이 된다.

③ O: 같은 기준 4.1.1(10)은 **요구 높이의 상록수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생장이 빠른 낙엽수를 배식하도록 한다. 필요한 높이에 도달하여 녹지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이며, 상록수의 확보 여부와 관계없이 낙엽수를 우선한다는 뜻은 아니다.

④ X: 같은 기준 4.1.1(9)에 따라 차폐녹지에는 상록수 중 **지엽의 밀도가 높은 수목**을 선택한다. 차폐는 보기 흉한 시설이나 구조물 등을 시각적으로 가리고 필요한 경우 사생활을 보호하는 기능이다. 상록수는 겨울에도 잎을 유지하고, 치밀한 가지와 잎은 시선이 통과하는 틈을 줄인다. 따라서 '지엽의 밀도가 낮은'은 '지엽의 밀도가 높은'으로 고쳐야 한다.

NoteBase

문 16. 토양의 물리적 특성에 해당하는 분석항목이 아닌 것은?

① 토성

② 포화투수계수

③ 전기전도도

④ 공극률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전기전도도는 토양 용액에 녹아 있는 **염류의 농도**를 파악하는 지표로, 토양의 화학적 특성에 해당한다.

개념 구분

물리적 특성: 토양 입자의 구성과 빈 공간, 물의 이동 같은 성질을 말한다. 토성은 모래·미사·점토의 상대적 비율에 따른 토양의 성질이고, 공극률은 토양 전체 부피에서 빈 공간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포화투수계수는 공극이 물로 포화된 상태에서 **물이 토양을 통과하기 쉬운 정도**를 나타낸다. 따라서 토성·포화투수계수·공극률은 물리적 특성의 분석항목이다.

화학적 특성: 전기전도도는 토양 용액이 전류를 전달하는 정도이다. 용액에 녹은 염류의 이온이 전하를 운반하므로, 전기전도도를 측정하여 **염류의 농도와 염류 집적 상태**를 평가한다. 따라서 전기전도도는 토양의 물리적 특성이 아니라 화학적 특성을 평가하는 분석항목이다.

NoteBase

문 17. 「생태면적률 적용 지침」상 공간유형별 가중치가 높은 인공화 지역부터 순서대로 나열된 것은?

ㄱ. 인공지반녹지: 40 cm ≤ 토심 < 90 cm
ㄴ. 옥상녹화: 30 cm ≤ 토심
ㄷ. 전면투수포장: 투수능력 1등급

① ㄱ > ㄴ > ㄷ
② ㄴ > ㄱ > ㄷ
③ ㄱ > ㄷ > ㄴ
④ ㄴ > ㄷ > ㄱ

정답 2번

공통 해설

제시된 토심·투수등급의 가중치는 **ㄴ 옥상녹화 0.7 > ㄱ 인공지반녹지 0.6 > ㄷ 전면투수포장 0.3** 순이다.

https://d2u7om5rih5x7z.cloudfront.net/ox-images/drive-repair/16druEOtTJPuubR2zbP-2jRPKzium5oN6.webp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2] 생태면적률 적용 대상사업, 산정방법 및 면적유형별 가중치(제7조의4 관련)
2. 면적유형별 가중치에 대한 상세한 판단기준은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의 [부록3] 생태면적률 적용 내 [별첨3] 면적유형별 판단기준을 따른다.

NoteBase

문 18. 「조경설계기준」 상 '환경친화적 단지조성'의 생태녹지축 설정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전적지분석을 통한 방법
② 동물이동 모의실험에 의한 방법
③ 연결성 평가에 의한 방법
④ 교통량 분석에 의한 방법

정답 4번

②

동물이동 모의실험은 프로그램으로 예측한 이동 경로를 중첩하여 **이동 중 방문횟수가 많은 지역을 생태축 입지로 설정**하는 방법이다.

환경친화적 단지조성(KDS 34 70 55:2024)
2.3.4 생태적 토지이용계획
(2) 보전적지 결과분석에 의한 보전용도지역 설정
③ 생태녹지축 설정 방법
생태녹지축은 아래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설정한다.
나. 동물이동 모의실험에 의한 방법
(가) 프로그램을 이용한 모의실험 결과인 이동 경로를 중첩하여 시각적으로 표현하며, 이동 중 방문횟수가 많은 지역을 최적의 생태축 입지로 설정한다.

NoteBase

④

생태녹지축 설정방법은 **보전적지분석, 동물이동 모의실험, 연결성 평가, 전문가 판단**이다. 교통량 분석은 이 설정방법에 포함되지 않는다.

환경친화적 단지조성(KDS 34 70 55:2024)
2.3.4 생태적 토지이용계획
(2) 보전적지 결과분석에 의한 보전용도지역 설정
③ 생태녹지축 설정 방법
생태녹지축은 아래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설정한다.
가. 보전적지분석을 통한 방법
보전적지 설정기준에서 제시한 내용을 분석하여 설정한다.
나. 동물이동 모의실험에 의한 방법
(가) 프로그램을 이용한 모의실험 결과인 이동 경로를 중첩하여 시각적으로 표현하며, 이동 중 방문횟수가 많은 지역을 최적의 생태축 입지로 설정한다.
(나) 동물이동 모의실험 시 고려사항은 동물의 이동성 및 연결성이며, 동물이동 빈도가 높은 지역, 동물이동 증진에 의한 도시 내 생물다양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이 생태축 설정의 기준이 된다.
다. 연결성 평가에 의한 방법
(가) 분절된 각각 녹지 조각들의 생태적 연결성을 평가하여 생태축 설정의 기준으로 삼는다.
(나) 다양한 연결성 지수를 평가하여 연결성 증대에 기여도가 높은 녹지축을 주요 녹지축으로 선정한다.
라. 전문가 판단에 의한 방법
조경학, 생태학, 도시계획 등 공간 환경계획 전문가들이 기존 지형도를 활용하여 생태축을 설정하고 현장답사를 통해 바로잡는 방법이다.

NoteBase

문 19. 통일신라시대에 조성된 사적 제18호 경주 동궁과 월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방지원도의 구성원리로 계획된 연못이다.

② 연못의 남쪽과 서쪽은 직선이고 동안은 돌출하는 반도로 되어 있으며, 북쪽은 굴곡 있는 해안형으로 되어 있다.

③ 『동사강목』의 기록으로 조선시대에는 안압지라고 불렀음을 알 수 있다.

④ 남안과 서안은 지형상 동안과 북안보다 2.5 m 가량 높아 건물에서 원지를 내려다 볼 수 있게 만들었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방지원도는 네모난 연못 안에 둥근 섬을 두는 구성이다. 월지는 **직선과 굴곡진 곡선이 결합된 불규칙한 연못**으로, 방지원도의 구성원리로 설명할 수 없다.

선지별 해설

① X: 방지원도는 **네모난 연못과 둥근 섬**을 결합한 형식이다. 월지는 남안·서안의 직선 호안과 동안·북안의 굴곡진 호안이 어우러진 불규칙한 연못이다. 따라서 '방지원도의 구성원리'는 '직선과 곡선을 결합하여 자연의 해안 경관을 표현한 구성'으로 고쳐야 한다.

② O: 남쪽과 서쪽의 물가 경계인 호안은 직선으로 조성하고, 동쪽은 반도가 돌출하며 북쪽은 해안처럼 굴곡지게 만들었다. 이러한 **직선과 곡선의 혼용**으로 연못 전체가 한눈에 드러나지 않게 하여 넓은 바다와 같은 경관을 표현하였다.

③ O: 조선 후기 안정복의 『동사강목』에는 이 연못을 **안압지라고 부른 기록**이 있다. 따라서 안압지는 조선시대에 사용한 명칭임을 알 수 있으며, 신라시대의 월지라는 이름과 구별된다.

④ O: 남안과 서안은 동안과 북안보다 약 2.5 m 높다. 이처럼 **건물이 있는 쪽의 지반을 더 높게** 구성하여, 남쪽과 서쪽의 건물에서 연못을 내려다보며 감상할 수 있게 하였다.

NoteBase

문 20.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상 '공원 및 녹지'를 계획하는 경우 고려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보존조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구역을 공원용지 면적에 포함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공원 또는 녹지는 단지 내에서 발생되는 비점오염 물질의 외부 유출을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위치 및 규모를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③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는 가급적 녹지축이 끊기지 않고 이어지도록 하며 나무의 종류·크기 등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④ 공원 또는 녹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보행네트워크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정답 1번

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존조치가 필요한 구역은 **녹지용지 면적**에 포함할 수 있다. 선지는 보존조치의 근거 법률과 산입할 용지의 종류를 모두 잘못 제시하였다.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3-14-1. 공원 및 녹지를 계획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4)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존조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구역을 녹지용지 면적에 포함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공원·녹지의 위치와 규모는 **단지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의 외부 유출을 줄이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3-14-1. 공원 및 녹지를 계획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3) 공원 또는 녹지는 단지내에서 발생되는 비점오염 물질의 외부 유출을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위치 및 규모를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NoteBase

③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는 **가급적 녹지축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도록** 하고, **나무의 종류와 크기가 서로 조화**되도록 계획한다.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3-14-1. 공원 및 녹지를 계획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2)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는 가급적 녹지축이 끊기지 않고 이어지도록 하며 나무의 종류 · 크기 등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④

공원·녹지를 계획할 때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보행네트워크와의 연계성**을 고려해야 한다.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3-14-1. 공원 및 녹지를 계획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5) 공원 또는 녹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보행네트워크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NoteBase